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96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나경원 · 김성원 · 서지영
조경태 · 구자근 · 서천호
김대식 · 송석준 · 김정재
엄태영 · 박수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대행(代行)”을 “대행(代行) 및 그와 관련된 의견의 진술 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받기”를 “받거나 권익을 보호받기”로, “신청”을 “신청(이의신청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이 위임한 민원 또는 법령”으로, “조사 및 확인”을 “조사·확인 및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제2조(업무)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u>대행(代行)</u>	4. ----- ----- <u>대행(代行) 및 그와 관련된 의견의 진술 대리</u>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u>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u>	5. ----- 받 <u>거나 권익을 보호받기</u> ----- ----- <u>신청</u> <u>(이의신청을 포함한다)</u>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u>법령</u> 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u>조사 및 확인</u>	7.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민원인이 위임한 민원 또는 <u>법령</u> ----- ----- <u>조사·확인</u> <u>및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